

대전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347
----------	-----

제출연월일 : 2008. 6. 23.
제 출 자 : 대전광역시장

1. 제안이유

- 가. 「비료관리법」등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인한 관련 부서의 개정 요구에 따라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
- 나.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규정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비료생산업 등록 등 6개 항목의 수수료를 삭제함(안 별표 2).
- 나. 공유재산의 대부 신청(신규)등 4개 항목의 수수료를 조정함(안 별표 2).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비료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건설 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의 : 관련부서와 합의되었음
- 라. 기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 (2) 규제심사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 (3) 입법예고 : 2008. 5. 16. ~ 6. 5. / 접수의견 없음

대전광역시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신청된 수수료에 대하여는 종전규정에 의한다.

[별표 2]

제증명 등 수수료(제3조 관련)

구 분	기준	요 액	비 고
1. 증명			
가. 외화획득용 원료가소요량 증명	1통	3,000원	
나. 외화획득용 원료확정소요량 증명	1통	1,000원	
다. 환지(예정지)증명	1필지	500원	
라. 체비지 대금 완납증명	1건	400원	
마.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1통	1,600원	
바. 공(시)영 주택분양금 납부증명	1통	1,100원	
사. 화재증명	1통	1,600원	
아. 그 밖의 제증명(위에 열거되지 아니한 증명으로써 수수료 징수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	1통	1,900원	
2. 인·허가·등록 등			
가. 입목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	1건	500원	
나. 도축검사			
(1) 소, 말	1두	1,200원	
(2) 돼지, 양	1두	700원	
다. 전기안전관리 대행업체 등록 신청	1건	1,000원	
라. 사업용 전기설비의 공사계획 신고 또는 변경	1건	20,000원	
마. 하천점용(물량증가)변경 허가	1건	공사비 또는 점용료의 1/1,000	
바. 유선, 도선사업 면허 또는 신고	1건	1,000원	
사.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신청			
(1)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5인 이내의 배	1척	34,000원	
(2)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6인 이상 10인 이하의 배	1척	34,000원	
(3)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11인 이상 20인 이하의 배	1척	34,000원	
(4)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21인 이상 및 기관을 장치한 배	1척	34,000원	

구 분	기준	요 액	비 고
아 건축사 신상변동사항 신고	1건	600원	
자. 공영주택의 양도·양수등 승인신청	1건	850원	
차. 체비지 명의변경 신청서	1건	600원	
카. 토지사용(체비지) 승락서	1건	500원	
타. 체비지 확인서(대부, 매수, 주소변경, 소유권변경)	1건	600원	
파. 체비지 소유자 확인원	1건	500원	
하. 환지예정지 분할	1필지	400원	
거. 환지예정지에 대한 종전토지 분할	1필지	400원	
너. 환지예정지 변경신청	1필지	1,600원	
더. 체비지 분할신청	1필지	1,200원	
러. 건설기계 저당권 설정등록 및 이전등록신청	1건	1,100원	
머. 건설기계 저당권의 변경 또는 말소 신청	1건	1,100원	
버.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 자격증 재교부	1건	5,200원	
서.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수수료	1건	5,300원	
어. 각분등 심사신청	1건	1,800원	
저. 그 밖의 각종 인·허가, 신고필증 재교부 신청	1건	1,700원	
처. 공인중개사자격증 재교부	1건	4,000원	
커. 승강기보수업 등록	1건	50,000원	
터. 승강기보수업 변경등록 및 등록증 재교부	1건	22,200원	
퍼. 전기공사업의 등록신청	1건	40,000원	
허. 전기공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신고	1건	30,000원	
고. 전기공사업의 승계(양도, 양수, 합병)신고	1건	30,000원	
노. 전기공사업의 상속신고 (다만, 허목 내지 노목은 지정공사업단체가 현금으로 징수)	1건	5,000원	
도. 전기공사업의 등록증, 등록수첩 재교부			
(1) 승계(양도, 양수, 합병)신고 재교부	1건	5,000원	
(2) 상속에 따른 재교부	1건	5,000원	
(3) 분실, 파손, 기재란부족 등 재교부	1건	5,000원	
로. 종합설계업			
(1) 등록신청	1건	50,000원	
(2) 양도·양수 또는 합병 신고	1건	45,000원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모. 전문설계업 1종			
(1) 등록신청	1건	30,000원	
(2) 양도 · 양수 또는 합병 신고	1건	25,000원	
보. 전문설계업 2종			
(1) 등록신청	1건	20,000원	
(2) 양도 · 양수 또는 합병 신고	1건	15,000원	
소. 종합감리업			
(1) 등록신청	1건	50,000원	
(2) 양도 · 양수 또는 합병 신고	1건	45,000원	
오. 전문감리업			
(1) 등록신청	1건	30,000원	
(2) 양도 · 양수 또는 합병 신고	1건	25,000원	
조. 설계 · 감리업의 변경신고 및 등록증 재교부	1건	5,000원	
초. 석유판매업 등록			
(1) 일반대리점, 용제대리점	1건	59,000원	
(2) 부생연료유 판매점	1건	59,000원	
코. 석유대체연료판매업 등록			
(1) 대리점 등록	1건	35,000원	
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1) 자가용화물자동차 사용(신규 · 변경)신고	1대	7,300원	
(2) 자가용화물자동차 유상운송 허가신청	1대	15,300원	
(3) 자가용화물자동차 임대 허가신청	1대	7,300원	
(4) 임대 자가용화물자동차 반환신고	1대	7,900원	
포. 음반 · 음악영상물 · 비디오물 등			
(1) 제작업 또는 배급업 신고	1건	20,000원	
(2) 제작업 또는 배급업 변경신고	1건	10,000원	
호. 골프장업 및 스키장업			
(1) 사업계획 승인신청	1건	100,000원	
(2)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	1건	30,000원	

구 분	기준	요 액	비 고
(3) 등록신청	1건	50,000원	
(4) 변경등록 신청	1건	20,000원	
구. 자동차경주장업			
(1) 사업계획 승인신청	1건	50,000원	
(2)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	1건	20,000원	
(3) 등록신청	1건	30,000원	
(4) 변경등록 신청	1건	10,000원	
3.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 적용 수수료			
가. 개별공시지가확인서 발급	1필지	800원	
나. 개별주택가격확인서 발급	1주택	800원	
다. 공동주택가격확인서 발급	1주택	800원	
라. 지방세납세증명서 발급	1통	800원	
마.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1필지	1,000원 / 칼라별급 ·도면첨부사 1,500원	
바. 공유재산의 대부 신청			
(1) 신규	1건	5,000원	
(2) 연장	1건	3,000원	
사. 의료기관 개설허가	1건	100,000원	
아.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신고	1건	40,000원	

신·구 조문 대비 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제증명 등 수수료(제3조 관련)				[별표 2] 제증명 등 수수료(제3조 관련)			
구 分	기준	요 액	비고	구 分	기준	요 액	비고
1 증명 가. (생략) 나. 외화회득용 원료 <u>확정소요량 증명</u> 다. ~ 라. (생략) 마. 납품 또는 공사 <u>사실증명</u> 바. ~ 자. (생략)	" 1통	<u>1,000원</u> <u>400원</u>		1 증명 가. (현행과 같음) 나. 외화회득용 원료 <u>확정소요량 증명</u> 다. ~ 라. (현행과 같음) <삭제> 마. ~ 아. (현행과 같음)	1통	<u>1,000원</u>	
2. 인·허가·등록 등 가. 공유재산의 대부 <u>(사용·수익허가)신청</u> (1) 신규 (2) 계속 나. ~ 마. (생략) 바. 농수산물도매시장 경매사 임면 승인신청 사. 중도매업 허가 및 변경신고 아. 매매참가인 등록 및 변경신고 자. ~ 저. (생략) 처. 종합병원 개설허가 커. 병원개설 허가 터. 의료기관개설 허가 사항 변경 퍼. ~ 노. (생략) 도. 비료생산업 등록 로. 비료수입업 신고 모. ~ 추. (생략)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u>28,000원</u> <u>2,000원</u> <u>1,800원</u> <u>2,000원</u> <u>2,000원</u> <u>2,000원</u> <u>56,500원</u> <u>50,000원</u> <u>30,000원</u> <u>43,800원</u> <u>26,200원</u>		2. 인·허가·등록 등 <삭제> 가. ~ 라. (현행과 같음) <삭제> <삭제> <삭제> 마. ~ 머. (현행과 같음) <삭제> <삭제> <삭제> 비. ~ 저. (현행과 같음) <삭제> <삭제> 처. ~ 구.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제증명 등 수수료(제3조 관련)				[별표 2] 제증명 등 수수료(제3조 관련)																			
구 분	기준	요 액	비고	구 분	기준	요 액	비고																
<p>3.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적용 수수료</p> <p>가. ~ 마. (생략) <u><신 설></u></p> <p><u><신 설></u></p> <p><u><신 설></u></p>				<p>3.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적용 수수료</p> <p>가. ~ 마. (현행과 같음)</p> <p>바. 공유재산의 대부 신청</p> <table> <tr> <td><u>(1) 신규</u></td><td><u>1건</u></td><td><u>5,000원</u></td></tr> <tr> <td><u>(2) 연장</u></td><td><u>1건</u></td><td><u>3,000원</u></td></tr> <tr> <td><u>사. 의료기관 개설 허가</u></td><td><u>1건</u></td><td><u>100,000원</u></td></tr> <tr> <td><u>아. 의료기관 개설 허가</u></td><td><u>1건</u></td><td><u>40,000원</u></td></tr> <tr> <td colspan="3"><u>사항 변경 신고</u></td></tr> </table>	<u>(1) 신규</u>	<u>1건</u>	<u>5,000원</u>	<u>(2) 연장</u>	<u>1건</u>	<u>3,000원</u>	<u>사. 의료기관 개설 허가</u>	<u>1건</u>	<u>100,000원</u>	<u>아. 의료기관 개설 허가</u>	<u>1건</u>	<u>40,000원</u>	<u>사항 변경 신고</u>						
<u>(1) 신규</u>	<u>1건</u>	<u>5,000원</u>																					
<u>(2) 연장</u>	<u>1건</u>	<u>3,000원</u>																					
<u>사. 의료기관 개설 허가</u>	<u>1건</u>	<u>100,000원</u>																					
<u>아. 의료기관 개설 허가</u>	<u>1건</u>	<u>40,000원</u>																					
<u>사항 변경 신고</u>																							

관 계 법령

□ 비료 관리법

제11조(비료생산업의 등록) ①비료를 생산하여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공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을 비료로 재생처리하여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공급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비료의 종류별로 제조원료·보증성분 등을 시장(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07. 8. 3, 시행일 2008. 8. 4)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료생산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7. 8. 3, 시행일 2008. 8. 4)

제12조(비료수입업의 신고) ①비료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비료의 종류별로 제조원료·보증성분 등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7. 8. 3, 시행일 2008. 8. 4)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료수입업을 신고 하는 자는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7. 8. 3, 시행일 2008. 8. 4)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중도매업의 허가) ① 중도매인의 업무를 하고자 하는 자는 부류별로 당해 도매시장의 개설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5조의3(매매참가인의 신고) 매매참가인의 업무를 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매시장·공판장 또는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 매매참가인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27조(경매사의 임면) ① 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에서의 공정하고 신속한 거래를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수 이상의 경매사를 두어야 한다.

② 경매사는 경매사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제42조(수수료 등의 징수제한) ① 도매시장의 개설자,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또는 중도매인은 다음 각 호의 금액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전을 징수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07. 1. 3, 시행일 2007. 7. 4)

1.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으로부터 도매시장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징수하는 도매시장의 사용료
2.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도매시장의 시설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시설사용료
3. 도매시장법인 또는 중도매인이 농수산물의 판매를 위탁한 출하자로부터 징수하는 거래액의 일정률 또는 일정액에 해당하는 위탁수수료
4. 시장도매인 또는 중도매인이 농수산물의 매매를 중개한 경우에 이를 매매한 자로부터 징수하는 거래액의 일정률에 해당하는 중개수수료
5.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도매시장의 쓰레기발생억제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품목 중 비규격출하물량에 대하여 업무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하자·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중도매인·매매참가인으로부터 징수하는 쓰레기유발부담금

□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2조(건설공사실적 등의 제출) ①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 능력의 평가를 받고자 하는 건설업자는 매년 2월 15일(제2항제2호의 서류의 경우에는 법인은 4월 15일, 개인은 5월 31일)까지 별지 제18호서식의 건설공사기성실적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영 제87조 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1 개정) [시행일 2008. 1. 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기성실적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7. 12. 1 개정) [시행일 2008. 1. 1]

1. 건설공사기성실적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으로부터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당해 공사를 발주한 기관이 발행한 별지 제19호서식의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하여 발행한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영 제8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건설공사실적을 미리 통보(건설산업정보망을 이용하여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한 통보를 포함한다)한 경우는 제외한다.

[별지 제19호서식]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신청)서										처리가간 즉시			
신청인	①상호						②대표자						
	③영업소소재지						④업종및등록번호						
공사내역													
⑤공사명						⑦총공사금액			백만원				
⑥현장소재지 (번지까지 기재)													
⑧공종(건설산업기 본법시행규칙 제 25조)						⑨인·허가기관							
⑩ 계약 연월	⑪ 착공 연월	⑫ 준공 (예정) 연월	⑬당년도 계약액 또 는 이월금액			⑮당년도기성액			⑯당년도기성지급액				
			⑭총계약금액			⑯전년도까지 누계기 성액			⑰전년도까지 누계지 급액				
조	천	백	십	억	천	백	조	천	백	십	억	천	백
역	역	역	역	만	만	만	역	역	역	만	만	만	만
⑯기타(공사의 규모: 공법·공동 도급내 역 등)													
년도중 위와 같이 건설공사기성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수료 없음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위 사실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발주자(수급인)													
·상호													
·법인(주민)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인													

210mm×297mm

(신문용지 54g/m²(재활용품))

□ 지방자치법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0310)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수수료 중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0.4>

제2조(수수료의 징수기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수수료 중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종류 및 그 금액은 별표와 같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별표에 따른 수수료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이를 가감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07.10.4>

부 칙<제19567호, 2006.6.29>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수수료 징수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은 제2조에 불구하고 그 수수료에 관한 조례가 새로 제정 또는 개정되어 시행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조례를 적용한다.

부 칙<제20310호, 2007.10.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수수료 징수기준은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라 조례가 새로이 제정 또는 개정되어 시행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개정 2007.10.4>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제2조 관련)

종 류	금 액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확인서의 발급 수수료	1필지당 800원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른 개별주택가격확인서의 발급 수수료	1주택당 800원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공동주택가격확인서의 발급 수수료	1주택당 800원
「지방세법」 제38조 제2항에 따른 지방세납세증명서의 발급 수수료	1건당 800원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의 발급수수료	1필지당 1,000원 (칼라 발급 또는 도면첨부의 경우에는 1,500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1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부 (신규) 신청수수료	1건당 5,000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1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부 (연장) 신청수수료	1건당 3,000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장등록 증명수수료	1통당 1,000원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개인) 수수료	1건당 20,000원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법인) 수수료	1건당 30,000원
「의료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신고 수수료	1건당 40,000원
「의료법」 제33조제5항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변경 신고 수수료	1건당 20,000원
「의료법」 제33조제4항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허가 수수료	1건당 100,000원
「의료법」 제33조제5항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 신고 수수료	1건당 40,000원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체육 시설업 신고 수수료	1건당 30,000원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체육 시설업 변경신고 수수료	1건당 10,000원

삭제대상 수수료 항목

(비료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수 수 료 항 목	기 준	현 행	개정안	비 고
○ 비료생산업 등록	1건	43,800원	삭제	업무이관(구)
○ 비료수입업 신고	1건	26,200원	"	"
○ 농수산물도매시장 경매시임면 승인신청	1건	1,800원	"	수수료항목 삭제
○ 중도매업 허가 및 변경신고	1건	2,000원	"	"
○ 매매참가인 등록 및 변경신고	1건	2,000원	"	"
○ 납품 또는 공사사실증명	1통	400원	"	"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항목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의 단서규정)

수 수 료 항 목	기 준	현 행	개 정 안 (통일요금)
○ 공유재산의 대부신청			
(1) 신규	1건	28,000원	5,000원
(2) 연장	"	2,000원	3,000원
○ 의료기관 개설허가	"	56,500원	100,000원
○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신고	"	30,000원	40,000원

※ 수수료 · 사용료 현실화 추진대상 항목이었으나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항목에 포함